

제198회 영등포구의회  
2016년도 제2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6. 12. 5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

#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檢 討 報 告

## 1. 경 과

의안 제184호로 2016년 11월 1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 
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상위법령에 위배되고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시 개선안에 대한  
의견수렴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보행환경 시책을  
정비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보행환경기본계획의 수립 조항 삭제(안 제3조제1항, 안 제5조)
- 나. 학부모 간담회 개최 사항 삭제(안 제8조제2항)

## 4. 참고사항

### 가. 관련근거

-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6조(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), 제7조(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)
-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(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), 제12조의2(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)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.

다. 입법예고 (2016. 9. 22. ~ 10. 12.) : 의견 없음.

## 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쾌적한 보행 환경을 위해 상위법의 규정과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
### ○ 주요 내용은

- 1)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와 안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중 「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특별시장이 수립하여야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규정을 폐지함.

2) 어린이 통학로 개선과 안전시설 보완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학부모와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간담회 규정을 삭제함.

-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학부모, 학교 및 경찰서 관계자들과 의견수렴 등이 추진되고있어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.

다만, 통학로 개선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계획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.

○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규정 등을 반영하여 보행자 안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사료됨.

## 관 련 법 령

### ■ 『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』

**제6조(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)**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(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. 이하 "특별시장등"이라 한다)는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관할 지역의 보행자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.

1. 보행자길에 설치된 안전시설 및 관리 현황
2. 보행자길에서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(積置物) 등의 현황
3.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(이하 "영상정보처리기기"라 한다), 보안등, 그 밖에 보행자를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
4.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**제7조(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)** ① 특별시장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

으로 본다.

1. 「[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](#)」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
  2. 「[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](#)」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
  3. 그 밖에 [대통령령](#)으로 정하는 교통·보행 관련 계획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
  2.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자원 조달 계획
  3.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·보수 및 성능 개선
  4.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
  5. 보행자길 신설,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
  6.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 함양 및 홍보
  7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보행환경 정비
- 가. 「[도로교통법](#)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
- 나. 「[도로교통법](#)」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
8.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[대통령령](#)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, 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④ 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도로·시설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
- ⑤ 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그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기본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

다.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13.3.23., 2014.11.19.>

⑥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민안전처장관은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제출 받으면 「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」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,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계획,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교통·보행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또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 등에게 기본계획안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., 2014.11.19.>

⑦ 특별시장등은 제6항에 따른 요청이 없으면 제5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계획을,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확정·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⑧ 특별시장등은 계획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

⑨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■ 『도로교통법』

**제12조(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)**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., 2014.1.28., 2014.11.19., 2015.7.24.>

1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
  2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
  3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학원
  4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,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「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·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
-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교육부, 행정자치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3.23., 2014.11.19.>
- ③ 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6.8.]

**제12조의2(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)**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,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., 2014.11.19.>

1.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시설
2.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
3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



3의2.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

4. 「[장애인복지법](#)」 [제58조](#)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[행정자치부령](#)으로 정하는 시설

② 제1항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, 행정자치부 및 국토교통부의 [공동부령](#)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3.23., 2014.11.19.>

③ 차마의 운전자는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6.8.]